재 결 요 약 서

<table>
<tr><td>사 건 명</td><td>광탄선 벌크호 · 유조선 오션호 충돌사건
(지방해심 제2026-001호)</td></tr>
<tr><td>해양사고관련자
(직책, 해기면허)</td><td>1. 김광석(벌크호 선장, 1급 항해사)
2. 박대양(오션호 선장. 파나마 면허 1급항해사)</td></tr>
<tr><td>판 시 사 항</td><td>1. 판시요지
가. 선박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나. 양 선박 간 항법관계 파악
다. 적극적인 피항동작 및 피항협력동작
라. 적절한 항해계획 수립과 안전한 속력 유지 여부
마. 주변 및 자선의 조타에 관한 적절한 경계 유지 여부

2. 관련 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해상교통안전법」제78조, 제80조 등</td></tr>
<tr><td>원인판단 주제어</td><td>횡단항법, 추월항법, 특수한 상황, 진로 방해, 충돌의 위험성, 충돌회피동작, 피항협력동작, 충돌, VHF통신, 조타감시, 조종성능</td></tr>
<tr><td>사 건 개 요</td><td>□ 관련선박 :
<table><tr><th>선 명</th><th>용 도</th><th>총톤수/길이
(GT/M)</th><th>선박소유자/
선적항</th><th>피 해</th></tr><tr><td>벌크호</td><td>광탄선</td><td>110,000/300.00</td><td>J SHIPPING/
제주시</td><td>- 정선수 우현
외판 등 손상</td></tr><tr><td>오션호</td><td>유조선</td><td>55,000/230.00</td><td>N SHIPPING/
Panama City</td><td>- 좌현 선수 측면
외판 등 손상</td></tr></table>□ 일 시 : 2026년 05월 25일 04시 33분경
□ 장 소 : 민국항 외항 묘박지 인근 해상
□ 사고경위
사고 당시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양 선박 모두 민국항 제1 도선구역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며, 항로를 따라 도선구역으로 접근하던 벌크호 전방으로 오션호가 항로에 진입하던 중 벌크호의</td></tr>
</table>

	정선수 우현과 오션호의 좌현 선수 측면이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를 이루며 충돌한 사건
주 문	이 충돌사건은 오션호가 조타상태와 주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회두가 계속 되도록 하고, 항로 밖에서 항로 안으로 진입하면서 항로를 항행하던 벌크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벌크호가 오션호의 동정과 충돌위험의 변화를 충분히 일찍 파악하지 못하고 자선의 만재상태와 조종성능을 고려한 조기의 감속 및 적극적인 충돌회피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김광석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박대양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참 고 사 항	
교 훈	1. 통항량 증가 및 야간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계 유지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진입하는 경우 안전하게 진입 2. 주변의 통항량, 자선의 조종성능을 고려한 안전한 속력 유지 3.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적극적인 피항동작 실시 4. 조종신호를 통해 자선의 의도를 상대선에게 전달 5. 필요한 경우 VHF 교신이나 주의환기신호 등을 적절히 활용 6. 항해당직자는 자선의 조종성능 숙지 및 조타감시 철저히 유지 7. 도선구역 접근 시 주변의 통항량 및 도선현황 숙지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